

‘26. 7.

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

김 제 시 의 회

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 안 번 호	2026-78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20.

제 출 자 : 김제시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및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, 제9조(위원의 선임)의 규정에 따라, 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선임인원 : 13명
- 위원임기 : 본회의 의결 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(약 2년)
- 대 상 자

연 번	위 원 명(선거구 순)	비 고
1	유 진 우	
2	주 상 현	
3	김 영 자	
4	오 승 경	
5	최 보 선	
6	오 상 민	
7	김 민 완	
8	장 민 우	
9	김 승 일	
10	문 순 자	
11	김 진 수	
12	손 정 애	
13	정 경 원	

【붙임】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선임)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조정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